

○울산지청공고 제2026-25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 및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 반납 신청을 수리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7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장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수리 공고

사업장명 (인증번호)	대표자명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취소일자
		근거규정	처분사유		
주식회사 다한기술 (제2020- 231호)	손O형 (울산시 동구 녹수길2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제1항 제4호	경영악화 등 사회적 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없이 인증을 반납하 는 경우	사회적기업 인정취소 (취소일로부터 3년간 인증 제한)	2026.4.10.

끝.